

第34回 市議會 臨時會
內 務 委 員 會

'94 主要業務報告

國際通商協力室

報 告 順 序

- ◇ 一 般 現 況 2
- ◇ 基 本 運 營 方 針 3
- ◇ 地 方 專 門 職 公 務 員 採 用 4

1. 一般現況

□ 組織設置

배경

- WTO(세계무역기구) 출범으로 개방화·국제화 추세가 가속화 되고 국가및 기업경영의 視界가 급속히 세계화 됨에따라
- 국가적 현안과제인 UR, GR 문제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
-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·자문조직으로 설치

○ 설치근거 :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('94. 5. 2)

○ 기 구 : 1室 13名

※ 각 시·도공히 지방4급의 실장과 일반직및 전문직으로 구성(평균16명)

○ 정·현원

구분 \ 직급	계	일 반					전 문
		4 급	5 급	6 급	7 급	기 능	
정 원	13	1	1	1	1	1	8
현 원	6	1	1	2	1	1	-

2. 基本運營方針

① 組織性格

- 전문연구·자문조직으로서 집행업무는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 -
- 국제교류, 국제통상 및 UR등 국제화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연구
- 과학기술의 국제화업무 전문연구
- 기존 여타 실·국에서 하던 일을 분담하지 않고 새로이 국제통상업무 전문연구 수행

② 擔當業務

- 국제화시책개발·연구 및 외국지방자치단체의 각종자료 수집
- 지방단위 통상정책, 중소기업의 통상업무 지원방안 연구 및 제도 개선
-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연구
- UR, GR대책등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사항 조사연구
- 농수축산물 유통구조개선방안 연구
-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 지원
-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업무 지원
- 국제교류·협력업무

3. 地方專門職 公務員採用

① 基本方針

- 모집근거 : 대전직할시 직제규칙 제1891 ('94. 5. 20)호
 - 대전직할시 직제규칙중 개정규칙 : 국제통상협력실 신설
- 모집시기 : '94. 8. ~ 9. 30
- 모집인원 및 분야
 - 모집인원 : 약간명
 - 대상분야 : 국제협력, 통상정책, 과학기술, 특화산업분야등
 - ※ 대상분야별 1~3명 모집 예정
- 모집방법
 - 공개채용으로 충원 (내무부 지침)
 - 최대한 조직의 목적에 부합되는 인력을 확보
 - 석·박사 학력을 소지하고 경험도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력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직의 설치목적에 합치되는 국제통상 협력분야의 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
- 담당 주요업무

분야별	주요내용
국제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제화 시책개발연구등 국제교류 관련업무추진 • UR·GR대책등 당면 현안사항 조사연구
통상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단위 통상정책,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·제도개선 •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안내 등
과학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
특화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농수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방안연구

② 採用方案

○ 대상자 자격

- 기본요건 :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,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채용 자격기준
 -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에 의거 『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』 적용
 - 분야별 해당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국제교류, 통상정책, 과학기술, 특화산업분야등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
 - ※ 가능한 외국어(영어, 일본어, 독일어, 중국어, 기타 외국어)에 능통한 자

○ 전형방법

- 서류전형, 외국어 능력평가, 면접시험등 실시
 - 대학교수, 공무원등으로 전형위원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선기준 마련
 - 최종합격자 심사시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임용등급 확정

○ 임용및 대우

- 임 용 기 간 : 3년범위내에서 채용계약 (성과에따라 재계약 가능)
 - 근 거 :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6조
- 근 무 관 계 : 상근 전임직 (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적용)
- 보수및수당 :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지급